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1년과 향후 전망







목 차

요 약/1

1. 미얀마 경제개방에 따른 변화 / 3

- 3 │ 1. 미얀마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
- *8* □ 2. 미얀마 정세 전망
- 11 3. 외국인투자법(시행령 포함) 주요 내용 및 전망

Ⅱ. 주요국의 투자진출 동향 / 22

- 22 1. 외국인투자 동향
- 24 2. 주요국의 투자진출 동향
- 27 3. 미얀마 투자의 리스크

Ⅲ. 우리기업의 대응 방향 / 30

- 30 1. 우리기업의 對미얀마 투자 문제점
- 33 2. 우리기업의 중점 투자 분야
- 36 3. 투자진출 경쟁에서 우위 확보 방안

요 약

- □ 미얀마는 오랜 군부통치와 폐쇄적인 경제정책, 서방경제제재 등으로 1960 년대 동남아 부국에서 2000년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였으나, 미얀마 신정부는 강력한 개혁, 개방조치를 취함으로써 미얀마가 동남아의 마지 막 미개척시장으로 재조명 받음.
- □ 2011년 4월에 테인세인 신정부는 미얀마 최초의 민선정부로서 개혁·개 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미국, EU 등 서방세계는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대부분 완화
- EU는 무기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제재를 해제키로 합의하였으나, 미국은 경제제재와 관련된 법률 개정없이 적용유예의 방법을 취함.
- □ 미얀마 신정부의 경제 개혁 조치의 핵심은 외국인투자법 개정 및 시행령 발표로 외국인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불신 감소와 법적 안정성 강화에 주안점을 둠.
- 외국인의 최소 투자금액의 폐지, 토지 임차기간 확대, 소득세 면제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 반면, 투자제한 및 금지 분야는 여전히 모호하고 투자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투자에 유의가 필요함.
- □ 주요국들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진출을 서두르고 있음.
- (미국)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GE, Caterpillar, Ford, Coca Cola 등 미국기 업이 강점을 가진 식음료, 금융, 호텔 등을 중심으로 진출 모색
- (중국) 미얀마(짜욱퓨)와 쿤밍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등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으나, 최근 반중국정서를 감안 '투자+인도적 지원'의 연성전략으로 변화 모색
- (일본) 미얀마 최대 최권국인 일본은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인프라, 전력, 천연자원 개발 등 전범위에 걸쳐 민관합동으로 대대적 진출
- □ 미얀마 투자에 대한 단순한 장미빛 전망보다는 투자에 따른 리스트를 점 검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신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은 대내외적인 신임도를 제고하는 데 성공했으나, 인종분쟁, 종교갈등, 환경문제 등 사회적 부작용 초래

- 단기간의 개혁·개방 조치는 세부지침 부재에 따른 일선현장의 혼란 가중, 적합한 현지 파트너 발굴 애로, 토지가격 급등과 인력난 등을 초래
- 신정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기존 군부세력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은 여전
- * 헌법상 국회의원의 25%는 군부가 지명, MEC, UMEHL 등 2개 지주회사가 미얀마 경제의 60%이상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
- 아웅산 수지는 국방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차기대선 집권을 구상하고 있으나 현 헌법상 차기대선(2015년말) 출마는 불가능
- □ 최근 1년간 미얀마를 선점하기 위한 주변국의 투자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미얀마 투자의 문제점 파악과 새로운 대응방안 모색 필요
- 동남아의 최빈국이라는 미얀마에 대한 기존 프레임으로는 미얀마 시장 선점에 한계가 있으며, 오랜 군부지배와 사회주의 영향, 외자에 대한 부 정적 정서 등 미얀마의 특수성 고려 필요
- 미얀마에 대한 장밋빛 환상으로 기초조사에 등한시 하거나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미얀마의 고위층(군부)와의 연줄과 인맥이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
-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정부차원의 체계적 진출 미흡으로, 미얀마 최고위층에서는 한국정부와 기업에 대해 투자에 소극적이라고 불만 표출
- □ 우리기업의 강점을 가진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 우위 확보 필요
- 미얀마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전력, 통신, 도로 등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는 현 미얀마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고려
- 양질의 저임금을 활용한 섬유봉제 등 임가공 분야, 최적의 농업 환경과 기술을 결합한 농업 투자, 한류를 바탕으로 한 프랜차이즈 산업 투자에 집중 필요
-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같이 기업차원보다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진출 방안을 마련하되, 한국과 미얀마의 문화적·역사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발전모델 제시 필요

Ⅰ. □얀마 경제개방에 따른 변화

1. 미얀마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

- □ 미얀마 경제제재와 신정부 출범
 - 1960년대 동남아 부국에서 2000년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
 - 버마식 사회주의*에 의한 폐쇄적 경제정책, 미얀마의 열악한 인 권과 반민주화에 따른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등의 영향으로 장 기간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경제침체가 주 원인
 - * 마르크스주의와 불교적 정신가치를 접목시킨 국가 운영의 기본 이념 으로,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국유화와 계획경제에 의한 자력성장이 주요내용
 - ㅇ 미국의 對미얀마 경제제재와 신정부 출범
 - 2003년 미국의 對버마(미얀마의 옛 명칭) 경제제재조치로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세계와 수출입, 금융거래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 군부는 사실상 항복
 - 민주주의로 가는 7단계 로드맵을 발표, 이에 따라 헌법 개정 및 신정부가 출범

□ 신정부 출범 이후의 변화

- 신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개혁 및 개방 조치 확대
 - 2011년 4월 신정부 출범 이후, Thein Sein(떼인 세인) 대통령은 강력한 개혁 및 개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 * 추진 개혁: 수치여사 감금 해제(2010.11.13.) 및 해외활동 허용, 반체제인사 블랙리스트 해제, 언론 검열 철폐, 시장환율제도 도입, 사전 수출입 인허가 제도 폐지 등
 - 하지만 과거 군부세력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일부 평도 있음.

○ Thein Sein(떼인 세인) 대통령의 친정체제 강화

- 군부 내 신정부의 개혁 및 개방정책에 반대하는 반개혁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한편, 개혁 및 개방추진을 위해 개혁 성향의 인사를 대거 등용하여 친정체제를 강화함.
- * 2012년 7월 1일 대통령의 개혁 및 개방정책에 반대하던 친군부 성향의 아웅 민트 우 부통령의 퇴임으로 정부 내 반개혁파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

□ 對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주요 조치

○ EU, 對미얀마 경제제재 적용 1년 유예 조치(2012.4)

-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한 개발원조 금지, 일반특혜관세 적용 금지, 군부인사, 관련 친인척 및 기업가의 EU 입국금지 및 자산동결 등의 제재에 대하여 유예조치 시행(약 500명의 개인과 800개사 이상의 법인은 제외)
- EU의 개인과 법인에 취해졌던 對미얀마 투자 및 수입금지 (목재, 금속 및 보석류 제외)에 대하여 유예조치 시행

○ 미국, 對미얀마 금융거래 금지 완화(2012.7)

- 일반허가 16호(OFAC General License No. 16)로 "미얀마 국방부나 무장단체와 관련된 투자 금지, SDN^{*} 리스트에 등 재된 미얀마 기업가 또는 개인(이들이 50% 이상 지분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경우 포함)과 관련된 투자 금지"를 제외한 미얀마에 대한 송금, L/C개설 등 각종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허용
- *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특별지정제재대상):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이 지정한 기업 및 개인 제재대상

○ 미국, 對미얀마 신규 투자 금지 완화(2012.7)

- 일반허가 17호(OFAC General License No. 17)로 "미얀마 국방부나 무장단체와 관련된 투자, SDN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기업가 또는 개인(이들 50%이상이 직·간접적인 소유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경우 포함)과 관련된 투자"를 제외한 미얀마에 대한 미국기업의 신규 투자 허용
- 50만불 이상의 신규 투자에 대해 매년 국무부 보고, 미얀마 석유가스공사(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에 대한 투 자시 60일내 국무부 보고 의무 신설

○ 미국, 국제원조기구의 對미얀마 지원 제재 완화(2012.10월)

- 법률 112-192호로 통해 그동안 미얀마에 대한 국제원조기구의 지원을 미국이 반대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유예 조치

○ 미국, 미얀마산 수입금지 완화(2012.11월)

- 일반허가 18호(OFAC General License No. 18)로 "옥과 루비, 또는 이의 가공 보석류, SDN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기업가 또는 개인(이들이 50%이상 직·간접적인 소유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경우 포함)과의 거래"를 제외한 미얀마산의 미국 수입을 완화

○ 미국, 미얀마 4개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 완화(2013.3월)

- 일반허가 19호(OFAC General License No. 19)로 SDN 리스트에 등재되었던 "Myanmar Economic Bank(MEB),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MICB), Ayeyarwady Bank, Asian Green Development Bank(AGD)" 등 4개 미얀마 은행과 미국기업의 금융거래를 승인

- * Innwa, Myawaddy Bank(국방부 소유 은행)와 Myanmar Foreign Trade Bank(국책은행)를 제외한 모든 미얀마 은행과 외화 금융거래 가능
- * 그러나, 경제제재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달러화 송금은 소액, 출처 등이 분명한 거래에 한해 이뤄지고 있음.
- * 한국의 외환은행에서 MICB로 달러송금이 가능

EU, 對미얀마 경제제재 1년 유예 조치 완전 폐지 합의 (2013. 4월)

- EU 외무장관회의에서 지난 1년간 적용 유예조치를 두었던 미 얀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무기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해제하기로 합의
- 당초 연초에 부여키로 예상되었던 미얀마에 대한 일반특혜 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지위 부여는 다소 지연되어 상반기 중 마무리 전망

□ 미국의 對미얀마 경제제재 전망

- ㅇ 지난 1년간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는 해제가 아닌 완화
 -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는 버마 자유민주주의법(2003년), 애국법(Patriot Law, 2012년)과 같은 6개의 법률과 5개의 대통령령으로 제재를 하고 있어 완전 해제를 위해선 상기 법률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
 -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 없이 적용유예 (Waive)의 방법을 취함.
 - * EU는 회원국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쉽게 제재 해제가 가능

ㅇ 對미얀마 경제제재, 완전 해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

- 당초 폐지가 예상되었던 버마 자유민주주의법에 대한 미국의회의 1년 연장 결정(2012.8월)과 같이, 상당수의 美의원들은 최근 급작스런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속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 기본적으로 일부 인사(SDN 리스트) 또는 일부 품목(무기류 및 보석류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수출입 및 신규투 자, 금융거래 등이 사실상 완전히 허용
- 하지만 미얀마의 개혁 및 개방 속도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률의 전면 폐지 또는 개정보다는 현재와 같은 행정부상의 적용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도 높음.

2. 미얀마 정세 전망

- □ 신정부, 개방 및 개혁, 민생 정책 추진으로 대내외 신임도 제고
 - ㅇ 지속적인 개방 및 개혁 정책으로 서방세계의 신임도 획득
 - 2011년 4월 신정부 출범 이후, 과거 군부세력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일부 평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Thein Sein 대통령은 수치여사 감금 해제(2010.11.13.) 및 해외활동 허용, 반체제인사 블랙리스트 해제, 언론 검열 철폐, 시장환율 도입, 수출입 인허가 제도 폐지 등 강력한 개혁 및 개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 미국, EU 등 서방세계는 신정부의 개혁 및 개방조치에 대하여 아직 이르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 경제제재 완화로 화답
 - ㅇ 민생 정책 추진으로 국민신임도 제고 및 재집권 가능성
 - 전력난 해소, 도로망 개선, 국민주택 및 일자리 확대, 공무원 월급 인상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민생 정책 적극 추진
 - 신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현 집권세력의 2015년 대선시 재집권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음
 - * 現대통령도 집권 초기 건강상의 이유로 재집권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으나, 최근 건강이 개선되면서 필요시 재임 가능성 표시

□ 신정부 출범에도 불구, 군부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여전

- 신정부 체제 강화에도 불구, 군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엔 한계
 - 군부는 헌법에 의거, 3개 핵심 부처 장관(국방부, 내무부, 국경부)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정부는 국방부 감사 권한이 없어 군부 활동에 대한 직접적 관여 불가
- 미얀마 군부, 2개의 지주회사를 통해 미얀마 경제의 60% 이상 영향력 행사
 - 군부는 국방부 산하 MEC와 UMEHL 등 2개 지주회사를 통해 자원개발, 농수산, 건설, 무역 등 미얀마 경제에 최소 60%이상 직간접인 영향력 행사
 - * MEC: Myanmar Economic Corporation / UMEHL: 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 군부세력 세대교체, 아웅산 수지 집권 가능성

- 개혁 성향의 인사 대거 등용으로 현 테인세인 정권 친정 체제 강화
 - 2012년 7월, 친군부 성향의 아웅 민트 우 부통령 퇴임으로 정부내 강경파 영향력 감소
 - 군부 핵심세력이 친정부성향의 젊은 소장파로 세대 교체 중
- 현 헌법상 아웅산 수지 차기대선(2015년말) 출마 불가
 - 영국인 배우자(사망), 영국 국적인 2명의 아들, 서방세계의 후원 등으로 현 헌법상으론 대선출마 불가

-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연방 상하원합동 재적의원 75%이상 찬성 필요, 사실상 군부 동의 없이 헌법 개정 불가
- *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의 25%는 군부에서 지명
- 최근 미얀마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수치여사의 참정 기회 부여 목적보다는 2008년 개정 시와 비교하여 변화된 정치·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며, 헌법 개정에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시, 2015년 대선 전 개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ㅇ 아웅산 수지의 군부와의 관계 개선 노력

- 2013년 3월 27일에 있었던 국군의 날 행사에 국방부의 특별 초청을 수락하고 공식 참가, "미얀마 국방부는 선친인 아웅산 장군이 창설하였기 때문에 국방부를 사랑하고, 국방부가보다 현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피력하여 군부와의관계 개선을 시도
- 수치 여사의 차기 집권 여부는 국방부와의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

3. 외국인투자법(시행령 포함) 주요 내용 및 전망

3.1. 외국인투자법 개정

□ 개정 배경

- 1988년 시장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외국인투자법 제정
 - 미얀마 정부는 1988년 시장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과 제한이 많음.
 - * 과실송금 금지. 투자제한, 민간토지 임대 불가 등으로 외국기업의 불만 증가
 -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자본 대거 이탈
- 2003년 미국, EU 등 서방세계의 對미얀마 경제제재 조치로 외국인투자 사실상 중단
 - 미얀마의 열악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압박조치로 서방이 경제제재를 취함에 따라, 외국인투자는 사실상 중단되거나 공적원조(ODA)에 의한 투자로 전환
-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 및 개방 정책 강화
 - 미얀마는 그동안의 폐쇄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 정책을 도입
 - 신정부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필요성은 더욱 증가
 - * 외국인 투자 개방에 따른 미얀마 기업의 경쟁력 상실, 내수시장 종속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미얀마 재정 및 기술 부족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간내 경제개발을 위해선 외국인 투자유치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공유
 - 2012년 11월 외국인투자법 개정 및 2013년 1월 시행령 발표

□ 개정 외국인투자법의 특징

ㅇ 외국인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불신 감소 노력 강화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보증, 과실 송금 보장, 계약 종료시 투자액 회수 보장 등을 법규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동안의 외 국기업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고자 함

ㅇ 외국인투자법의 구체화를 통해 법적 안정성 강화

-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분야, 중소기업 보호 등 표현 내지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했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표 현 내지 후속 법규로 이를 보충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음
- 당초 개정(안)에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민간업체와 합작하지 않은 축산업'등의 표현으로 그 범위가 모호하였음
- 이를 '법규 및 지침으로 제한하여 내국인만이 할 수 있는 축 산업 분야'로 수정, 법규 및 지침에 한정하도록 강제함으로 서 법적 안정성을 높임

□ 외국인투자법 개정시 주요 쟁점

ㅇ 외국인 최저 투자금액 기준 신설 여부

- 당초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외국인투자보다는 대규모 투자 위주로 유치하겠다는 미얀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외 국인의 최저 투자금액을 U\$ 500만 또는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승인하는 U\$ 500만에 상응하는 외화(유로화 등)'로 추진함.
- 그러나, 최저 금액이 현실과 달리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외국인의 투자를 막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최소투자금 규정은 삭제됨.

- * 외국인투자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DICA(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에 의하면 투자하고자 업종분야의 평 균적인 최소투자금 이상은 투자해야 승인이 가능하며, 투자대상 업종, 첨단기술 여부, 현지인 고용규모 등에 따라 승인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함.
- * (구)외국인투자법에는 최소투자금을 제조업 50만 달러, 서비스업 30만 달러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때까지는 위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ㅇ 외국인의 투자 제한 분야의 합작시 투자 비율

- 당초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이 투자가 제한된 사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 합작 형태로만 가능하며, 외국자본 비율은 최저 35%에서 최대 49% 이내'로 한정했으나,
- 최종 시행령에서는 합작형태로 투자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며, 별도의 법규에 의해 제한하지 않는 한 최대 80%까지 외국인이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함.

ㅇ 외국인 투자에 대한 미얀마인의 매수권

-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자금과 관련된 생산 또는 서비스의 지원'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미얀마인(기업)의 매수 권을 계약서 상에 표시하여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외국기업의 강한 반발로 인해 개정 법률에서는 삭제되었음.

ㅇ 외국인 투자 관련 토지 임차기간

- '기본 50년 + 10년 + 10년 연장 가능'으로 변경되었으며, 정부 보유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민간인에게도 토지를 임차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
- * 당초 외국인 투자 관련 토지임차기간은 기본 30년이며, 10년 + 5년 연장 가능함.

□ 외국인투자법 주요내용

ㅇ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

- 외국인투자법 제4조는 소수민족의 문화, 풍습 등을 해치는 사업, 국민 건강에 해로운 사업, 자원, 자연환경 등에 해로운 사업 등 12개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금지 분야로 지정

ㅇ 투자 인센티브

- 제조 또는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시작한 때부터 5년간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경우, 투자사업의 성공 시기에 따라 소득세 면제 또는 혜택 기간 조정 가능

ㅇ 토지임차 기간

- 투자가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이용 기간을 사업, 산업, 업종 및 투자 금액에 따라 최초 50년까지 승인하며, 만료 후에도 투자 금액 및 업종에 따라 1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로 10년간 재연장 가능

ㅇ 주식의 양도

- 외국기업이, 본인의 모든 주식을 외국인 또는 현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정리 및 등록을 해야 함.

ㅇ 기술 관련 분야 투자시 현지인 고용의무

- 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현지인 기술자 및 직원을 첫 2년간은 전체 채용인원의 25% 이상, 두 번째 2년간은 50% 이상, 세 번째 2년간은 75% 이상 채용할 의무를 가짐.

ㅇ 외화 송금

- 투자자는 관련 외화를 국내의 외환거래가 가능한 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음.

3.2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시행령 개요

- o 국가기획경제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시행령(고시번호 11/2013)
 - 외국인투자법의 조문별 해석 및 적용과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
-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시행령
 (고시번호 1/2013)
 -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분야를 규정

□ 국가기획경제개발부(MNEPD) 고시 시행령 주요 내용

- ㅇ 외국인 투자제한 대상 업종
 -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에서 미얀마 내국인만이 가능한 25개 업종(제조업 10, 서비스업 9, 농업 2, 축산업 2, 어업 2)을 지 정하였으며, 동령 제 11조에서 연방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부처에서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
- ㅇ 합작투자시 외국인투자 비율
 - 시행령 제20조는 "외국인이 금지된 사업 또는 제한된 사업을 내국인과 합작할 경우, 외화투자자본의 비율이 총 투자금액의 8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0~80%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위원회가 연방정부의 승인 및 공고를 통해 변경 가능

ㅇ 투자제안서 검토팀 구성

- 시행령 제37조는 투자제안서와 관련하여 10개 관련 부처의 고위직이 참여하는 검토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 환경, 노동 등 다방면에 걸쳐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투자제안서 검토팀의 구성>

연번	부서명
1	투자회사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2	관세국(Customs Department)
3	국세국(Internal Revenue Department)
4	노동관리국(Department of Labour)
5	전력부 담당부서(Relevant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Electric Power)
6	주거주택개발국(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 and Housing Development)
7	공업관리감독국(Directorate of Industrial Supervision & Inspection)
8	무역국(Directorate of Trade)
9	프로젝트 평가 및 관리국(Project Appraisal & Progress Reporting Department)
10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Conservation Department)

○ 근로자 채용, 교육훈련계획 보고, 사회보험 가입의무 명시

- 시행령 제77조, 제80조, 제86조 등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무, 교육훈련, 사회보험 가입의무 명시, 노동분쟁 해결 기준 등을 명시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가의 현지인 고용 및 근로 자에 대한 의무를 한층 강화

ㅇ 환경영향 평가 의무

- 시행령 제42조, 제44조, 제47조 제5항 등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환경보호임업부*에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Ministr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Forestry

ㅇ 보험가입 의무 명시

- 시행령 제12장은 투자와 관련하여 미얀마 국내보험사에 기계, 화재, 홍수, 상해, 자연재해, 생명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중소규모 투자의 경우 보험가입의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전망

ㅇ 토지임차 기간

- 시행령 제99조는 최초 50년간 임차 가능하며, 추가로 10년 씩 2회 연장이 가능
- 미개간지, 휴경지, 황무지를 이용하여 농축산업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 30년간 임차가 가능하며, 투자금액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추가기가 연장도 가능
- 임차료는 연1회 지불하며,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할 경우 임차료 외에 임차에 대한 프리미엄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 으며, 종교, 문화 및 자연유산, 국가안보, 법적분쟁지, 환경 침해 지역 등은 임차 불가

○ 외국환 송금

- 시행령 제146조에서 투자가는 1)위원회가 인출 승인한 외환 2)관련법에 의한 보상액 3)관련법에 의거 지분양도 대가 4) 청산 후 몫 5)투자승인 만료 또는 양도에 따른 금액 6)투자 규모 감소액 7)순이익 8)세금 및 생활비를 제외한 외국인의 급여에 대하여 송금이 가능
- 시행령 제146조 제3항에서 '연간 수익에서 세금과 기금을 제외한 수익금(Net Profit)'의 외화 송금을 보장

ㅇ 외국인투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범부처 합동지원실 설치

- 시행령 제157조에서는 외국인투자 편의를 위해 투자회사관 리국(DICA)에 중앙은행, 전력부, 관세청, 상무부, 노동부, 이민주민등록부, 공업부, 국세청 등 9개 부처의 파견공무원 으로 구성된 범부처 합동지원실을 설치하도록 규정

ㅇ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 시행령 제163조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해 승인을 득한 경우, 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행정처벌 부과가 가능하며, 필요시 형사처벌도 가능

□ 외국인투자위원회(MIC) 고시 시행령 주요 내용

ㅇ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 국가안보, 환경오염, 폐처리 시설, 옥·보석 채굴, 중소규모의 광업개발, 전략 거래 및 행정, 항공 및 해안 관제, 출판및 미디어 등 21개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금지

<외국인에게 금지되는 업종>

연번	업 종				
1	국방부에 관련된 무기의 생산 또는 유통업				
2	숲, 종교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곳 또는 종교적인 행사를 치루는 곳, 목초 지, 논밭, 과수원, 수자원에 해로운 영업, 제조, 생산시설				
3	화학비료, 종자, 묘종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농업법률에서 정한 조건과 맞지 않은 영업, 제조, 생산시설				
4	해외에서 버린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공장을 설립해서 제조하는 사업				
5	오존층 보호를 위해 몬트리올협약이 금지한 Hydrobromo fluoro-carbon(HBFC) 34종류, Bromo-chloromethane 1종류, Cholorofluorocarbon 5종류, Halogenated(CFC) 10종류, Halon 3종류, Halogenated CFC 10종류, Carbon Tetrachloride 10종류를 제조하는 영업, 제조, 생산시설				
6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POPs)에 의해 금지되는 21종류의 영업, 제조, 생산시설				

7	중고 기계 및 공구를 사용하여 자연을 해롭게 하거나 환경 관련 법률, 시행령, 지침에 위배되는 영업, 제조, 생산시설 또는, 위험한 물질을 제조 또는 이용하는 영업, 제조, 생산시설			
8	천연 숲을 관리 보존하는 사업			
9	옥·보석 채굴, 탐사, 채굴사업			
10	중소규모의 광물 개발사업			
11	석면(Asbestos)이 사용된 건축자재를 제조, 판매, 유통하는 영업· 제조· 생산시설			
12	전력망 관리업			
13	전력의 상업적 배전			
14	전력망 및 장비의 검사			
15	석유정제공장에서 자연과 인체에 해로운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 TEL(Tetra Ethyl Lead)과 같은 물질의 수입, 생산 및 사용			
16	국민 건강에 해로운 대기, 토양, 수질오염, 연기와 악취, 먼지, 소음, 화학물질, 전자물질, 방사능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영업·제조·생산 시설			
17	강 연안에서 이뤄지는 금을 포함한 기타 광물자원 개발 사업			
18	항공관제 서비스			
19	해안관제 서비스			
20	인쇄 및 방송 미디어 합작 사업			
21	미얀마어 포함한 기타 소수민족 언어로 정기간행물의 유통			

ㅇ 내국인(현지인)과 합작형태로 승인되는 업종

- 내국인과 합작투자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MNPED 시행령 제20조), 식음료 및 생활용품 제조, 백신 생산, 제약 원료 생산, 대규모 무기물질, 금속류 채굴 및 생산, 건설업, 주거용 및 오피스 빌딩 개발 및 판매, 국내외항공 및 선박 운송서비스, 개인 전문 및 전통의학 전문 병원, 여행업 등 42개 분야에 대해 합작투자가 가능

<내국인과 합작 형태로만 승인되는 업종>

연번	업 종
1	계량 종자 생산 및 유통
2	우량 종자 및 묘목, 국내 종자 및 묘목의 선별, 생산 및 유통
3	과자, 와플, 국수, 쌀국수, 면 등 곡식을 이용하여 생산 및 상업적 유통
4	사탕, 야자(CoCo), 초콜릿 등 간식류의 생산 및 상업적 유통

5	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조리, 캔포장 및 상업적 유통				
6	발아보리를 이용한 주류 생산 및 유통업				
7	술, 소독액 등 주류 및 주류가 아닌 제품의 생산, 혼합, 정제, 포장 및 상업적 유통				
8	다양한 형태의 얼음 생산 및 상업적 유통				
9	정수업 및 생수업				
10	다양한 종류의 원사 생산 및 상업적 유통				
11	도자기, 그릇, 접시, 수저 , 포크 등 다양한 형태의 주방용품의 생산 및 상업적 유통				
12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상업적 유통				
13	고무 및 플라스틱 생산				
14	포장업				
15	인조가죽 외에 신발, 핸드백, 원가죽 등을 포함한 가죽 제품 생산 및 상업적 유통				
16	다양한 형태의 제지 제품의 생산 및 상업적 유통				
17	파라핀지, 양피지, 화장실용 휴지 등 제지 및 카드보드지로부터 생 산된 제지 제품의 생산 및 상업적 유통				
18	국내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화학제품의 생산 및 유통				
19	인화성 물질인 Acetylene, Gasoline, Propane, Hair Sprays, Perfume, Deodorant, Insect Spray 제품의 생산 및 유통				
20	화학제품인(Oxygen, Hydrogen Peroxide), 압축한 가스 (Acetone, Argon, Hydrogen, Nitrogen, Acetylene)의 생산 및 유통				
21	화학제품인 Sulfuric Acid, Nitric Acid의 생산 및 유통				
22	산업용 화학 가스(액체, 기체, 고체)의 생산 및 유통				
23	제약 원료의 생산				
24	첨단기술(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예방백신의 생산				
25	광업 및 철강업을 개발 및 탐사				
26	대규모의 무기물질 및 금속류의 채굴 및 생산(Extraction)				
27	건물 및 공장의 건설, 교량 및 건물에 사용되는 철강제 및 콘크리트 제품 생산 공장				
28	교량,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 개발 및 건설 프로 젝트				
29	국제 수준의 골프, 리조트 개발 사업				
30	주택건물(Apartment), 공공건물의 개발, 판매 및 임대				
31	상업용 빌딩 및 사무실의 개발 및 판매				
32	산업공단과 연계된 주거단지 내의 주택건물(Apartment)의 개발, 판매 및 임대				
33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저가형대중주택의 개발 및 건설				
-					

34	신도시 개발				
35	국내 여객·화물 항공운송 서비스				
36	국제 여객·화물 항공운송 서비스				
37	여객·화물 선박운송 서비스				
38	선박 건조 및 수리				
39	컨테이너 야적장 및 물류창고의 건설을 통한 항만서비스(내륙수로,				
	강 등)				
40	기관차 및 전동차의 생산				
41	개인 전문병원 및 개인전문 전통의학 병원				
42	여행업				

ㅇ 특정 요건 하에 외국인투자가 승인되는 업종

- 관련 정부부처의 사전승인, 국제적 표준 준수, 특정조건 충족 등 특정요건 하에서만 외국인투자가 승인되는 업종으로 177개 분야의 업종이 대상

Ⅱ. 주요국의 투자진출 동향

1. 외국인투자 동향

□ 중국, 태국, 홍콩이 對미얀마 외국인투자 주도

- o 2013년 2월말 현재,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누적 신고기준으로 420억 9,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
- 주요 투자국은 중국, 태국, 홍콩, 한국, 영국, 싱가포르 순
- 미국 및 서방의 경제제재로 여파로 인해 아직까지는 주로 아세안 및 주변국들의 투자가 주류
 - 2013년 1월 이후 미국이 15건, 2억 3,460만 달러 투자 승인을 받아 미국이 서방국가로는 처음으로 미얀마 투자국 13위를 기록

<주요국별 미얀마 투자 비중(신고/누적기준)>

(단위: US\$백만)

국별	투자액	비중
 중국	14,180	33.69%
 태국	9,568	22.73%
호코	6,381	15.16%
한국	2,979	7.08%
영국	2,989	7.10%
싱가포르	2,216	5.26%
말레이시아	1,031	2.45%
프랑스	469	1.11%
베트남	371	0.88%
인도	273	0.65%
일본	270	0.64%
기타	1,368	3.25%
(미국)	(234.6)	(0.56%)
총계	42,095	100.00%

주: 투자신고기준 누적액(회계년도 2012.4-2013.2월) 기준)

자료원: 미얀마투자위원회(MIC)

□ 전력, 석유가스, 광업 등 3개 분야 집중

- 최근 3년간 외국인투자는 전력, 석유가스, 광업, 봉제업, 호텔/관광업,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고 있음
 - 전력분야 192억 달러, 석유가스 143억 달러, 광업 28억 달러로 3개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전체의 86%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투자는 235건으로 약 21억 달러에 불과

<산업별 對미얀마 투자 비중(신고/누적기준, 2013.2월)>

(단위: US \$백만)

산업별	투자액	비중
전력	19,238	45.70%
석유와 가스	14,372	34.14%
광업	2,830	6.72%
 제 조업	2,138	5.08%
호텔/관광업	1,365	3.24%
 부동산	1,056	2.51%
축산/어업	330	0.78%
교통/통신	314	0.75%
 공업단지건설	193	0.46%
 농 업	183	0.43%
 건 설	38	0.09%
기타 서비스	38	0.09%
 총 계	42,095	100.00%

주: 투자신고기준 누적액(회계년도 2012.4-2013.2월) 기준)

자료원: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t Investment Commission; MIC)

2. 주요국의 투자진출 동향

- □ (미국) 경제 제재 해제, 영향력 확대, 몇몇 대표기업을 중심 으로 진출 강화 중
 - 미국 오바마 대통령 미얀마 방문 후 향후 2년간 미얀마 정치 개혁 진전 여부에 따라 1억 7천만 달러 지원 약속('12.11월)
 - GE, Caterpillar Inc, Ford, Coca Cola 등 미국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식음료, 금융, 호텔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모색
 - 2012년까지 신규 투자가 전무하였으나, 1월 이후 15건 2억 4,400만 달러의 투자 승인 획득

< 미국의 對미얀마 정책 동향 >

- ㅇ 미 재무부 對미얀마 금융서비스 및 투자 활동 승인 ('12.7월)
- ㅇ 국제개발은행의 對미얀마 지원 금지 완화 ('12.9월)
- ㅇ 미국의 對미얀마 수입규제 철폐 ('12.11월)
- ㅇ 미국기업과 미얀마 4대 은행 간의 금융거래 허가 ('13.2월)
- ㅇ 미국 투자사절단 미얀마 방문 ('13.2월)
 - 국무차관. 상공회의소 및 5개 기업대표로 구성

□ (중국) 서방 경제제재하 독점적 지위에서 반 중국정서를 의식 '연성전략'으로 변화 모색

- 중국 남서부 개발, 인도양 진출, 자원 확보 등 국가차원의 경제개발 목표에 따라 미얀마에 적극 투자진출, 경제제재로 고립된 미얀마에 독점적 기반 구축
 - 미얀마내 화교세력을 활용한 저인망식 싹쓸이 정책으로 미얀마 내 反중국 정서 확대
 - * 2013년 2월말 기준, 중국의 對미얀마 투자액은 142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34%차지(1위), 홍콩 포함시 외국인 투자 절반 차지

- 서방경제제재 해제를 계기로 "투자+인도적 지원"의 연성전 략으로 변화 모색
 - 최근 파이프라인 건설지역(짜욱퓨)에 병원과 학교 건설 계획 발표, 지역주민 지원 등에 적극 나서고 있음
- □ (일본) 인프라, 전력, 천연자원 개발, 양곤 개발 등 전 범위에 걸쳐 발 빠르게 대응
 - 일본은 미얀마 최대 채권국(총 5,020억엔)이며, 연간 3천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바탕으로 'All Japan'의 기치아래 대대적 진출
 - 부처별 일본기업 지원안 마련('12.9), 민관협의회 창설('12.10) 등 일본정부의 전략적 지원 강화
 - * 과거 일본의 해외진출 사례와 비교시, 전문가들도 일본기업의 신속 행보에 놀라움을 표시
 - * 실례로 JICA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양곤시 개발 30년 계획 수립을 위해 YCDC에 30명이 넘는 전문가가 파견되어 프로젝트수행 등 미얀마 정책 전분야에 걸쳐 국가주도로 대대적 지원

< 일본의 분야별 진출 동향 >

- (금융) 미즈호 코포레이트은행 주재원사무소 개설('12년 4월),
 다이와총연과 도쿄증권거래소는 미얀마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소
 설립 및 자본시장 육성지원에 관한 MOU체결('12년 5월)
- (물류) ANA 나리타-양곤직항편 12년만에 취항 ('12년 12월)
 상선미츠이 싱가포르-양곤 신항로 개설 발표('12년 3월)
- (IT) 후지제록스 주재사무소 개설 및 복사기 및 프린터시장 조사시작('12년 12월) NEC는 주요 양곤 등 2개 도시에 지점을 설치('13년 1월)
- (종합상사) 마루베니, 미츠이물산, 스미토모상사, 미츠이상사, 이토츄상사 등 대부분이 기진출

□ (인도) 미국, 중국 등과 차별화 전략으로 진출 적극 노력

-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동부 4주 발전을 위해 미얀마와 협력 강화
 -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쳐져 있는 인도 북동부 4주의 발전을 위해 미얀마와의 항만, 도로 건설과 에너지(육상 석유·천 연가스 광구확보) 및 농지확보를 통한 계약재배에 역점
 - 중국이 관심을 갖지 않는 낙후산업기반과 인적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지원
- 싱 총리 미얀마 방문('12.5월) 이후, 양국간 관계 긴밀화
 - 미얀마 서부지역의 전력망 확충, 송전선 설치, 전력케이블 공장 건립 위한 8,400만 달러 지원 합의

□ (아세안) 인프라, 소비재, 호텔 등 각국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진출

- 태국은 남부 드웨이 심해항구 개발(86억 달러)*과 농식품 투자 (CP社 5.5억 달러) 등 인프라 및 소비재 중심으로 투자 확대
 - * 드웨이 프로젝트 개발사(ITD)의 자금난으로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정부간 지원 합의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음
- 싱가포르, 홍콩 등 화교자본은 미얀마의 소규모 서비스, 부동 산, 농업 등에 투자(최근 통신, 전자, 호텔 등을 중심으로 투 자 확대)
- 베트남은 Thein Sein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곤 중심지 에 3억 달러 규모의 호텔 및 상업시설 건설 프로젝트 진행

3. 미얀마 투자의 리스크

- □ 신정부의 개혁 및 개방 정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발생
 - 소수민족 내전, 인종분쟁, 종교갈등, 환경문제 등 사회적 문제 발생
 - 개혁 및 개방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라카인 주의 로힝가^{*} 인종 분쟁, 불교도와 무슬림간의 종교갈등,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및 환경보호 분쟁, 카친 등에서의 소수민족의 내전 등 종래 군부가 지배시에 발생하지 않았던, 사회 문제가 빈번히 발생
 - * 로힝가 족은 미얀마 서북부의 라카인 주에 주로 거주하는 소수 민족으로, 대부분이 무슬림인 관계로, 군사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순혈주의와 불교 교리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탄압을 지속
 -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대처에 대해 국제사회를 비롯한 일반국민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신정 부의 대처능력이 향후 재집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단기간 내 개방 및 개혁에 따른 부작용 증가

- 고위층의 적극적인 개혁 및 개방 의지에 대한 일선현장의 뒷 받침 부재
 -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시장환율 도입, 민간은행 외국환 거래 허용, 수출입 사전허가제 폐지, FEC(Foreign Exchange Cerficate, 외국환태환권) 폐지, 보험업 민간허용 등 경제 시 스템 전반을 바꾸는 개혁조치를 실시함.

- 그러나, 단기간 내 시행된 개혁 조치로, 제도 변경의 큰 틀은 세워졌으나 그에 따른 세부지침이 뒤따르지 못해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불가피한 현지기업과의 합작에 따른 투자 리스크 증가

- 외국인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대부분 합작형태로만 허용
 -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호텔, 주류 및 식품류의 제조 등 외국인의 관심이 높은 분야는 합작투자만 허용함에 따라, 현지기업과 합작에 따른 투자 리스크가 증가

ㅇ 국제적 수준의 최적의 파트너 발굴 어려움

- 장기간에 걸친 사회주의적 국가경영체제의 영향으로 민간부 문이 취약하고 국제수준의 합작사를 설립할 수 있는 현지기 업은 한정되어 있어, 이들 소수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러 브콜이 집중
- 미얀마 기업의 경우, 합작투자시 자본 및 기술의 부족으로 대부분 보유토지의 현물출자, 對미얀마 정부 인허가 로비 등을 담당
- * 최근 급등하고 있는 토지 가격과 공시제도 부재로 인해 현금출자한 토지에 대한 이견이 빈번히 발생
- * 대 정부 로비를 이유로 언더테이블 머니를 요구, 합작투자액 수령 후 잠적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

□ 토지가격 급등 및 단기간 내 투자 급증에 인력난 우려

ㅇ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부 토지 민영화에 따른 가격 급등

- 2007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37% → 15%)과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간 내 토지가격이 급등
- 2006년 미얀마 정부의 수도 이전에 따른 자금 확보 등의 이유로 양곤에 보유한 다량의 정부 소유 토지를 민간에 매각함에 따라, 임대료가 저렴한 정부 토지 대신, 5배 이상 비싼민간 토지 임대 불가피

<양곤시 중심지역 토지 가격 추이(평방피트당, 짜트화)>

위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Innya Rd	220,000	400,000	500,000	800,000	810,000
Innya Lane	120,000	240,000	300,000	350,000	420,000
Dagon Rd	250,000	500,000	700,000	800,000	900,000
Dagon Lane	120,000	240,000	300,000	350,000	400,000
6mile, Pyay Rd	210,000	350,000	800,000	820,000	850,000
8mile, Pyay Road	150,000	200,000	250,000	300,000	400,000
Kabaraye Pagoda Rd	200,000	350,000	400,000	450,000	500,000

자료원: Akyosaung 부동산 주간지, Pyi Myanmar 주간지, 양곤무역관 조사 종합주: 미화 1달러 = 약 890짜트('13.5월)

○ 인구 6천만의 풍부한 인적자원, 현실은 가용인력 부족

- 인구의 65%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양곤 등 대도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각종 문제(상하수도 시스템 부족, 교통량 증가, 집값 상승 등)로 인해 외부인력 유입을 제한
- 현 임금수준 대비, 양곤 등 대도시의 거주비용이 매우 높아 농촌인구의 자연스러운 도시 유입에도 한계, 단기간내 5천 ~ 1만 명의 대규모 인력확보 어려움 발생
- * 정치적 소요,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기숙사 운영도 불허
- 정부차원의 기업 기숙사 운영 허용, 농촌인력 도시 유입 승인 등 현실적인 조치로 문제 해결이 필요

Ⅲ. │ 우리기업의 대응 방향

1. 우리기업의 對미얀마 투자 문제점

- □ 미얀마의 특수성 고려 없이 기존 동남아진출 프레임으로 접근
 - 신정부 출범에 따른 내외부의 급격한 개방 요구에 따라
 시장 개방
 - 동남아의 경우, 국가적 경제개발 필요성과 1990년대 말 금융위기로 외화부족을 겪으면서 주요 부문을 대폭 개방하며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
 - 미얀마의 경우, 서방의 경제제재 여파로 2011년 자의적·타 의적으로 신정부 출범 및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49년간의 군부지배 및 버마식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국가주도의 계획 경제의 여파가 사회전반에 걸쳐 잔재
 - 따라서, 아직까지 외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강하며, 대 외개방에 대해 소극적이고, 가급적이면 현지기업에 의한 개 발을 선호
 - * 대규모 자금 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기업에 개방하려 하며, 이 경우 단독 보다는 합작투자 형태로 승인 선호

ㅇ 경쟁국 대비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투자진출 전략 부족

- 한국은 1990년 이후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등 일부 민간기 업에 의한 미얀마가 주를 이룬 반면, 일본, 중국 등은 대규모 ODA를 바탕으로 정부주도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이뤄짐.
- * 한국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미얀마에 대한 EDCF 신규 투자가 잠정 중단 되었으나, 일본과 중국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정부차 원의 ODA/직접투자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미얀 마 시장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

- 이 미얀마에 대한 장밋빛 환상으로 기초조사는 등한시하는 경향
 - 풍부한 자원과 넓은 국토, 인구 6천만의 시장,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인력, 동남아의 마지막 미개척지 등 미얀마에 대한 장밋빛 환상으로 미얀마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성급한 사업 진행
 - HS Code별 수출입 통계, 인구통계 등 기초통계조차 부족한 미얀마 현실을 감안할 때, 철저한 기초조사는 필수
- ㅇ 미얀마 현실은 배제한 채 동남아국가 수준의 투자환경 생각
 - 미얀마는 아직까지 외국인투자 승인을 특혜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며, 대규모 투자에 대하여 무상 토지 임대, 간접시설 무상설치, 인력교육 등의 혜택을 제시하는 동남아 국가와 달리,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여에 대한 고려 없이 오히려, 높은 수준의 토지 임차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

□ 충분한 준비 없이 고위층과 만나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

- 이 미얀마 정부 및 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과 고위층과의 만남만 선호
 - 미얀마 고위층의 대부분이 장군 출신으로 자국에 대한 자부 심이 강하나, 한국기업의 일부는 미얀마가 최빈국이라는 이 유로 낮게 보는 경향이 발생
 - * 정상적인 프로토콜 절차와 방문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미얀마 최고위층 방문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 미얀마 산업과 경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위층과 만나면 다되는 것으로 오해

- ㅇ 미얀마는 연줄, 인맥, 군부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
 -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줄 및 인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정교한 사업계획, 적 합한 제품 및 사업기술 등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
 - 일부기업의 경우, 정상적인 투자진출 프로세스보다 현지인 차명, 군부 등 실세와의 거래 등 편법을 선호하다 오히려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

□ 민간주도의 투자에 따른 실질적 후속조치 지연

- 이 미얀마 정부, 고위층과의 면담이후 한국기업의 소극적인
 투자 움직임에 불만
 - 미얀마의 최고위층이 한국정부 및 기업에 대하여 "No More NATO (No Action Talk Only)"라고 언급할 정도로 한국기 업의 소극적 투자에 대한 불만 표출
 - * 2011년 신정부 초기, 미얀마 고위층은 한국기업과의 만남에 적 극적이었으나, 이후 경쟁국인 일본, 중국 등과 달리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자 한국기업과의 만남에 점차 소극적이며 일부는 한국 기업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불만 표출
 - * 이는 한국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기업의 미얀마 진출에 악영향으로 작용

2. 우리기업의 중점 투자 분야

□ 미얀마의 고질적 문제인 "電·通·道"가 해답

- 미얀마는 단기간내 경제성장을 위해, 그 동안 아킬레스 건으로 지목되어 왔던 "전력, 통신, 도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할 전망이며, 특히 이들 분야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임
 - * 미얀마의 전력생산량은 9,711백만kwh로 우리나라의 2.1% 정도에 불과하며, 전력손실율이 26%에 달하고, 전화보급율은 7%, 양곤, 네피도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비포장 상태임
- 전력, 통신, 도로 분야는 우리 기업이 특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로 집중 투자를 하나, 일본,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CMP 분야

- 미얀마의 생산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90-110 달러로 베 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
 - 낮은 문맹률과 근면함을 갖고 있어, 중소기업의 한계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CMP (Cutting, Making, Packing) 분야의 진출이 유망
 - * 현지 봉제업체에 따르면, 미얀마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의 절반 수 준인데 반해 노동 생산성은 베트남의 80% 수준으로 임금 대비 노 동 생산성은 베트남의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미얀마의 풍부한 에너지·광물자원 확보

- 미얀마는 다양한 형태의 복잡한 지질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종 에너지 및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나 2003년 경제제재 이후 신규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음
 - * 미얀마는 두꺼운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는 대륙붕은 물론 중부 내륙지방에도 원유 및 가스가 매장되어 있음
 - * 동부 산악지대에는 Oil shale이 발견되고 있으며, 쥬라기 시대에 형성된 석탄이 동부산악지대 및 북서부내륙지방에 분포되어 있 고 철, 동, 니켈, 금, 은 등의 기초 광물과 우라늄을 내포한 페 그마타이트(Pegmatite), 알래스카이트(Alaskite) 등 광물질도 풍부
- 미얀마 정부도 그동안 현지기업 위주의 탐사 및 개발을 진행 하였으나, 자본 및 기술부족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외국자본에도 문호를 개방 추세임
 - * 우리나라는 2003년 ODA의 일환으로 전문가를 파견, 공동조사 활동을 한 경험이 있음
 - * 당시 조사 결과 금속광물중 가장 유망한 광물로 니켈(순도 1.45%~2.2%)이 지목되어, Tagaung Taung 니켈광상의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이후, 이후 동 광산은 중국이확보

□ 최적의 농업 환경과 선진 농업기술을 결합한 농업 투자

- 미얀마의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질, 고온의 열대기후는 3
 모작이 가능할 정도로 최적의 농업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도 농업 생산량 및 농촌가구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
 - * 미얀마 인구의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업관련 시설 및 기계 부족으로 생산량이 낮고, 품질 대비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
 - * 일부 정미소의 경우, 1930-40년대의 기계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실정

○ 대규모 농지 확보를 통한 농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정미소, 가공식품 제조, 비료 등 농업 관련 산업도 유망

□ 국민소득 증가와 한류를 바탕으로 한 프랜차이즈 산업

-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현지화의 강세로 인해 국민의 구매력이 급속 도로 증가함에 따라 외식서비스, 뷰티산업 등을 중심으로 프 랜차이즈 산업이 태동하기 시작
 - * 2013.4월에 외국계로서는 처음으로 개장한 롯데리아는 1일 매출이 국내 A급 매장의 2배를 상회할 정도로 현지에서 인기
 - * BBQ도 현지의 대표적 프랜차이즈 기업인 YKKO와 합작으로 1호점 개설 중
- 미얀마의 한국 및 한국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프랜차이즈 진출에 활용 가능

3. 투자진출 경쟁에서 우위 확보 방안

- □ 기업차원의 산별적 접근보다 국가차원의 종합적 진출 방안 필요
 - 미얀마 진출을 국가적 큰 틀에서 종합전략을 수립하며, 정부와 개별기업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 타워 마련
 - EDCF, ODA, KSP 등 원조사업과 기업 및 금융기관 중심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진출 전략 마련
 - *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은 미얀마에 대한 깊은 역사적 이해와 장 기간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집중적 협력 활동을 전개
 - * 대규모 유무상 원조 및 차관 제공, 부채탕감 등의 정부간 협력정 책과 민간기업의 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계
- □ 투자진출 기업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한국기업 경제자유구역 건립
 - 미얀마의 높은 임대료, 대규모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미얀마 양곤 인근에 대규모 제4의 경제자유구역 건립 * 기지정 경제자유구역: 띨라와(일본). 더웨이(태국). 짜욱퓨(중국)
 - 한-미얀마 관계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진출촉진
 - * 단기(한계 중소기업 이전) → 중기(에너지 관련 인프라 건설) →
 장기(금융 등 서비스산업) 등 시기 및 산업 성숙도에 따라 진출
 하여 상호 시너지 창출

□ 한국과의 문화적·역사적 유사성 공유의 적극 활용

- 미얀마는 한국과 인종적·언어적·역사적으로 높은 유사성을 갖고 있어,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 한국에 대해 친근한 감정을 표시
 - 미얀마는 몽고반점으로 대표되는 북방계의 DNA를 갖고 있으며, 언어 또한 유사한 언어계통인 티벳·미얀마어계로 우리와 어순이 같고 조사도 사용
 - * 중국, 인도 등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몽고, 영국, 일본의 식민지 경험과 49년간의 군부통치의 경험
 - * 미얀마에도 한국의 '정(情)'에 해당하는 '땅요진'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연과 정을 중요시
- 산업화에 있어, 집권층(군부)과 경제발전 주도 세력은 한국이 걸어왔던 산업발전 모델을 선호하고 있어, 우리의 산업화 경 험을 미얀마 진출에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한류를 투자진출에 적극 활용

- 지난 2002년 "가을동화"를 통해 시작된 한류는 2013년 현재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 당시 문화 소비층이었던 학생들이 한류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이제는 한류 경제소비 주체로 부상
 - * 양국간 문화적·역사적 공감대가 한류 인기 지속의 원동력으로 작용 중
 - * 1일 평균 우리 드라마가 3-4편 이상 방영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의 황금시간대에 방영될 정도로 인기

/끝.

작성자

◈ 양곤 무역관

고성민 과장

◈ 신흥시장팀

김종상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3-042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1년과 향후 전망

발행인 |오영호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12013년 6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